|  |  |  |
| --- | --- | --- |
| **북경 등 8개 성/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승인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3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북경 등 8개 성/시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71호)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상해시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1] 111호) 및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에 근거하여, 시범업무 납세인의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본 공고 제2조의 상황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실시 이전(이하'‘시범업무 실시 전’으로 통칭함)에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세주관세무기관(이하 ‘주관세무기관’으로 통칭함)에서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범업무 납세인의 실시 전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환산한다. "과세대상 서비스 연간 매출액 = 연속 12개월 미만의 과세대상 서비스 영업액 합계 ÷ (1+3%)"이다. 과세대상 서비스 영업액 계산의 구체적인 개시 및 종료 일자는 시범 지구의 성급 국가세무국(계획단열시 포함, 이하 동일)이 본 성/시 실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하는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 서비스 영업액은 공제하기 전의 영업액에 따라 계산한다.  2. 시범업무 시행 전, 이미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하고 과세대상 서비스를 겸업하는 시범업무 납세인은 승인 신청을 재처리 할 필요 없으며, 주관세무기관이 <세무사항통지서>를 제작 및 송달하여 납세인에게 고지한다.  3. 시범업무 시행 전, 과세대상 서비스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하인 시범업무 납세인은 주관세무기관에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4. 시범업무 시행 전, 시범업무 납세인의 일반납세인 자격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범지구 성급 국가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및 본 공고에 근거하여 확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비안한다.  5.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 후,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 및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증을 처리해야 한다.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 사항에 관한 규정>(재세[2011]111호) 제1조 제(3)항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하는 시범납세인의 과세대상 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공제 전 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6. 시범업무 납세인이 일반납세인 자격을 취득한 후, 증치세 탈세나 세금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공제증명 허위발급 등 행위를 행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6개월 이상의 납세지도기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7. 본 공고는 재세[2012]71호 제2조 시범업무 일자에 규정된 일자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10일 |  | **关于北京等8省市营业税改征**  **增值税试点增值税一般纳税人**  **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38号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北京等8省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2]71号）、《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1]111号）及《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令第22号），现就试点纳税人有关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事项公告如下：  　 一、除本公告第二条外, 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前（以下简称试点实施前）应税服务年销售额超过500万元的试点纳税人，应向国税主管税务机关（以下简称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一般纳税人资格认定手续。  　 试点纳税人试点实施前的应税服务年销售额按以下公式换算：应税服务年销售额＝连续不超过12个月应税服务营业额合计÷（1+3％）。计算应税服务营业额的具体起、止时间由试点地区省级国家税务局（包括计划单列市，下同）根据本省市的实际情况确定。  　 按照现行营业税规定差额征收营业税的试点纳税人，其应税服务营业额按未扣除之前的营业额计算。  　 二、试点实施前已取得一般纳税人资格并兼有应税服务的试点纳税人，不需重新申请认定，由主管税务机关制作、送达《税务事项通知书》，告知纳税人。  　 三、试点实施前应税服务年销售额未超过500万元的试点纳税人,可以向主管税务机关申请一般纳税人资格认定。  　 四、试点实施前，试点纳税人一般纳税人资格认定具体程序由试点地区省级国家税务局根据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和本公告确定，并报国家税务总局备案。  　 五、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后，试点纳税人应按照国家税务总局令第22号及其相关程序规定，办理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  　 按《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有关事项的规定》（财税[2011]111号印发）第一条第（三）项确定销售额的试点纳税人，其应税服务年销售额按未扣除之前的销售额计算。  　 六、试点纳税人取得一般纳税人资格后，发生增值税偷税、骗取退税和虚开增值税扣税凭证等行为的，主管税务机关可以对其实行不少于6个月的纳税辅导期管理。  　 七、本公告按照财税[2012]71号第二条试点日期规定的日期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二○一二年八月十日 |